

공지사항

중고품 수입추천 안내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공고 제117호

상공자원부고시 1993-12호(수출입별도공고증 개정고시 : 34.15) 제1장 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한국전자공업진흥회(이하 “본회”라 한다)장이 추천토록 되어있는 중고품 수입추천(이하 “수입추천”이라 한다)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93. 4. 15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출입 별도공고증 개정고시 제1장 제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에 위임된 수입추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품목)

동 고시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품목으로서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와 정밀 전자계측기를 추천대상 품목으로 한다.

제3조(추천제한)

수입코자하는 물품의 신품이 수입선다변화 품목공고에 의하여 수입선 다변화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한입초국(원산지 또는 선적지 기준)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다.

제4조(추천대상자 자격)

(1) HS 8471 해당품목중 중형 및 대형의 컴퓨터 본체와 그 주변기기는 실수요자에 한한다.

(2) 기타의 컴퓨터 본체와 그 주변기기 및 정밀전자 계측기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실수요자에 한한다.

제5조(추천기준)

국산공급이 불가능한 것 또는 원산지가 대한

민국인 것

제6조(추천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입추천 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1) 수입승인 신청서 6부(임대차 수출입의 경우에는 대외무역 관리규정 별지 제3-3호 서식)
- (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 확약서 1부(무상기증 등의 경우에는 당해 사실 입증서류)
- (3)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4) 수입대행계약서 1부(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5) 리스계약서 1부(리스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6) 카탈로그 또는 기타 증빙서류
- (7) 기타 수출입별도공고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중고품수입 심의위원회 운영)

수입추천 업무의 원활화와 심의를 위하여 중고품 수출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심의대상)

추천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입추천을 처리할 수 있다.

1. 본회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2.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제9조(처리기간)

(1) 추천서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한다.

(심의회 : 상정건은 10일 이내에 처리한다.)

(2)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

공지사항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외국기관 및 해외 공관과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2.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3.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4. 공휴일

제10조(유효기간)

(1)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일로부터 30일로 한다.

(2)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은 <별표 1>에 제1조 가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변경신청)

본회가 추천한 수입추천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표 1>의 제1조 나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 신청)

(1) 본회가 추천한 수입추천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신청자는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반려된 수입추천 신청서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의 제2조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실적 보고)

추천실적은 매월 및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소정양식에 의거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4조(기 타)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의 일반관리 또는 본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의 수출입

별도공고 제1장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 받은 품목은 이 개정요령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 받은 것으로 본다.

3. (폐지)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공고 제113호는 폐지한다.

관세양허대상 수출품 원산지 증명발급 규정 정중 개정 안내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21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양허 수출품 원산지증명 발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3. 5.

상공자원부장관

제1-2조 제3항중 “CCCN 4단위”를 “HS 4단위”로 한다.

제1-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원산지증명 발급기관 및 서명권자)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자원부, 마산 및 이리수출자유지역관리소, 서울특별시, 각 직할시, 각도 및 구미시, 천안시, 여수시, 포항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성남시, 평택시, 목포시, 경산시, 울산시, 진주시, 김해시, 완도군, 양산군으로 한다.

(※ 발급기관: 각 시·도 등 21개 기관 →33개 기관으로 확대)

제1-6조, 제1-10조, 제5-6조중 “상공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2-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공여국별 원산지기준) ① 가공도기준의 공여국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가공도기준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공여국은 EC, 일본,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및 오스트리아이다.(18

공지사항

개국)

2. 가공도기준 공여국의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수입 원자재와 수출품간의 HS 4단위 변경이 있어야 하나, EC GSP원산지규정상의 LIST에 해당하는 품목은 품목별로 규정한 특별한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수출국이 원산지국가로 인정된다.

제2-6조 제2항중 “FORM 59A”를 “FORM A 또는 FORM 59A”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관세양허대상품목)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의 협정국에서 정한 국별 관세양허품목에 한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관세양허대상품목) ESCAP*개발도상국 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이하 “방콕협정”이라 한다)의 협정국에서 한 국별 관세양허대상품목에 한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관세양허대상품목) 한·오스트리아 수공예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협정에 따라 오스트리아에서 정한 관세양허대상품목에 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은 1993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주) ESCAP(Economic & Social Commission of Asia & Pacific)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 위원회

신규기계설비 구입을 위한 외화표시 원화 대출 대상품목 등록안내

국산개발품의 사용확대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육성과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을 촉진코자 신규개발기계설비 구입을 위한 외화표시 원화대출 대상품목 등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다 음 -

1. 용자개요

- 용자규모 : 총 1조원
- 용자대상 : 한국기계공업진흥회에 신규개발품목으로 등록한 기계설비.
- 용자방식 : 외화(미불화)표시 원화대출
- 용자조건
- 용자비율 : 중소기업→소요자금의 100% 이내
 대기업→소요자금의 90% 이내(첨단기술산업은 100% 이내)
- 용자기간 : 80년 이내(거치기간은 대출기간의 1/3범위내)
- 이 율 : LIBOR+2% 이내
- 상환방법 : 원금→연 4회 균등분할상환
 이자→3월마다 후취
- 용자취급은행 :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국민은행, 조흥은행, 한국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동화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 하나은행, 보람은행, 평화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충청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경기은행, 전북은행, 강원은행, 경남은행, 충북은행

2. 등록대상품목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88년 1월 이후 판매개시한 기계설비를 등록대상으로 한다.
 - 가.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사업에 의해 개발된 기계설비

*** 공지사항 ***

나. 정부의 정책사업(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의해 개발된 기계설비

다. 특허법 제87조 및 실용신안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되어 신규로 개발된 기계설비

라. 정부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기계설비

마. 기술도입에 의해 개발된 기계설비

바. 주문제작에 의하여 새로이 설계된 품목으로서 신청접수기관이 확인한 기계설비

사. 플랜트 성격을 가진 건설용 기계설비(이동형 기계설비로서 대량생산방식에 의한 것은 제외)

아. 기타 신규개발기계류의 심의위원회가 신규개발품으로 인정한 기계설비

3. 신청 및 등록기관

가. 신청기관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557-2417) 외 8개기관

나. 등록기관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4. 등록신청 구비서류

• 신규개발기계설비 등록신청은 생산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하되 품목별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신규개발 기계설비 생산신고서(소정양식) 1부

나. 신고품목 용도설명서 및 서약서(소정양식) 각1부

다. 국산개발(판매실적) 확인서류사본(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중 택일) : 모델확인가능요.

라. 기타 확인에 필요한 서류(제품사진, 도면, 카탈로그 중 택일/필요시 성능개선비교표 등)

* 도장지참(접수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5. 융자 대상품목 선정절차

가. 국산기계설비 개발업체는 개발품목의 양산개시후 한국기계공업진흥회 등 신청접수 기관에 개발품목을 신고한다.(한국전자공업 진흥회 557-2417)

나.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이외의 신청접수 기관은 신청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한국기계공업진흥회에 수시로 통보한다.

다. 한국기계공업진흥회는 검토결과(또는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개발완료된 품목을 융자대상품목 명부에 등재한다.(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

6. 융자대상품목 통보

가. 한국기계공업진흥회는 등록된 개발품목 및 업체명단을 매월 해당은행에 통보한다.

나. 융자대상품목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업계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확인서를 우선 발급하고 차후에 융자대상품목 명부에 추가한다.

다. 해당은행은 융자대상 품목명부 또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발행한 확인서에 의해서 융자대상을 취급한다.

7. 기타

가. 판매개시(또는 양산개시)란 신제품을 개발하여 양산하거나 시중에 판매하는 시점 을 말하며 시제품을 제작, 수요자에게 판매하여 품질시험 단계에 있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단순한 모델변경은 신제품 개발로 보지 아니하고 주요기능이 변경되거나 성능이 향상(생산성 향상, 에너지절감 등)된 경우는 신제품 개발로 본다.

다. 주문시마다 설계를 새로이 하여 개발·제작된 플랜트 성격의 기계장치류는 심의 위원회가 신규개발품 여부를 결정한다.

공지사항

8. 문의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산업전자과 557-2417,
553-0941 FAX 563-7339

'93. 2차 기계류·부품 및 소재 국산화 개발 대상품목 조사 안내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산업 구조의 개편과 무역 역조의 균형적인 시정을 위하여 국산화 품목을 발굴, '92년에 1,023개 품목(양산 223개 포함) 고시와 '93. 1차 649 개품목(양산 144개 포함)을 고시하였고 기고 시된 품목에 대하여는 공업발전기금 등을 장기저리로 지원육성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3. 2차 고시품목을 발굴하여 적정한 자금지원을 계획코자 하오니 신제 품개발이 필요한 품목과 개발 완료되어 양산화가 필요한 품목은 다음과 같이 해당 품목 별 국산개발협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산개발 협의회명	설치단체명	소관품목	제출 기한
가전제품, 전자응용기기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가전산업부 (553-0941/7)	가전제품, 전자응용기기	'93. 6. 19 (토)
컴퓨터 H/W 통신기기, 의료기기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부 (553-0941/7)	컴퓨터 H/W 통신기기분야 의료기기분야	'93. 6. 19 (토)
전자부품 (반도체, 소재)	전자부품종합기술 연구소 사업개발1과 (528-8661/2)	전자부품, 반도체, 소재	'93. 6. 19 (토)
계측제어기기	한국계측기연구조합 (556-1581)	계측제어기기	'93. 6. 19 (토)
컴퓨터S/W	정보처리산업진흥회 기술진흥부(713-8848)	컴퓨터S/W	'93. 6. 19 (토)

공단용지 분양안내

1. 전주 제3공단용지 분양

- 분양면적 : 782,876평
- 분양가 : 평당 155,000원
- 분양기간 : '93. 5. 19 ~ 7. 16(87일간)
- 연락처 :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단
(TEL : 0652-87-0323)

2. 강원도 농·광공단지

- 분양지역
 - 춘천시 퇴계농공단지(분양면적 : 100,748평, 분양가 : 평당 289,000원)
 - 화천군 원천농공단지(분양면적 : 30,589평, 분양가 : 평당 126,000원선)
 - 영월군 문곡농공단지(분양면적 : 34,182평, 분양가 : 평당 120,000원선)
 - 철원군 김화농공단지(분양면적 : 45,000평, 분양가 : 평당 110,000원선)
 - 삼척군 원덕농공단지(분양면적 : 33,301평, 분양가 : 평당 110,000원선)
 - 삼척군 도계광공단지(분양면적 : 30,000평, 분양가 : 평당 100,000원선)
 - 태백시 철암광공단지(분양면적 : 30,250평, 분양가 : 평당 60,000원선)
 - 정선군 증산광공단지(분양면적 : 35,050평, 분양가 : 평당 55,000원선)
 - 정선군 함백광공단지(분양면적 : 22,171평, 분양가 : 평당 60,000원선)
- 분양시 혜택 : 세제지원 및 금융지원
- 3. 동해북평 공업단지
- 분양면적 : 744,000평
- 분양가격 : 평당 250,000원 수준
- 단지준공예정일 : '93. 12월
- 연락처 : 강원도 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
(TEL : 02-785-4015/6)
 - * 공단유지 홍보책자는 본회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음.

공지사항

국민제안제도 실시에 따른 안내

정부는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종 불편·불만사항, 제도개선이 미흡한 사항, 행정제도·형태·관행 등이 국민편의 보다는 형평편의 위주로 되어 있었던 사항 등을 과감히 발굴 이를 적극 개선하고자 국민제안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 제도를 널리 홍보 사회저변에 확산·전파 코져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동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입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사용료 소득 등 원천징수 요령 안내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개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외국에서 유입되는 자본·기술 인적 자원의 규모가 커지고 우리기업이 해외에 지급하는 외화소득 규모도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로서 우리기업이 해외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세법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하나 기업이 실제로 원천징수를 이행하고자 할 때 복잡한 조세규정과 조세감면 해당여부 판단이 곤란하여 이의 안내를 위해 국세청에서 발간한 책자중 상공자원부에 해당하는 외자도입 관련 사항만 정리 안내 합니다.

1. 원천징수 근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6호 및 9호

○ 소득세법 134조

2. 원천징수 대상

○ 외자도입법, 기술용역육성법, 외환관리법 등에 의해 도입되는 기술(용역)대가

3.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종류 및 원천징수 방법

각호	개인		법인		
	소득명	원천징수율 (%)	각호	소득명	원천징수율 (%)
1	이자	25	1	이자	25
2	배당	25	2	배당	25
3	부동산	×	3	부동산	×
4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료	2	4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료	2
5	사업	2	5	사업	2
6	인적용역	20	6	인적용역	20
7	근로	×	7	××××	×
8	퇴직	×	8	×××	×
9	양도	×	9	양도	×
10	산림	×	10	산림	×
11	사용료	25	11	사용료	25
12	유가증권양도	10 (25)	10	유가증권양도	10 (25)
13	기타	25	11	기타	25

(× : 해당없음)

4. 소득별 감면기간 및 감면방법

(1) 배당소득

○ 감면근거 : 외자도입법 제14조

○ 감면기간

대상기간	감면크기
○'91. 2. 28 이후 인가분	○5년간 50% 감면
○'91. 2. 28 이전 인가분	○5년간 100% 감면
○'84. 6. 30 이전 인가분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감면방법

배당소득의 종류	소득구분	감면대상여부	비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실지배당	인가영업소득 인가외영업소득	감면 감면배제	
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	감면	발상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름

공지사항

(2) 사용료 소득

- 현행법상 기술(용역) 도입은 외자도입법, 기술용역육성법 및 외국환 관리법 등에 의하고 있으나
-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은 원칙적으로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대가에 한함.

대상기간	감면기간 감면범위	감면대상 기술	감면방법
'91.3.1이후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100%	제무부의 기술도입 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도기술	주무장관에 조세면제 신청	
'91.3.1이전 '84.7.1이후 신고분	계약에 따라 인가 (신고수리)된 기술	면세포기 가능	
'84.7.1이전 인가분	인가일로부터 5년간 100%, 3년간 50%	인가된 기술 자동 면제	

국제특허연수원 지적재산권 연수안내

국제특허연수원은 상공부 특허청 산하의 지적재산권 전문 연수기관으로서 지적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수과정을 개설중에 있으니 기업체, 연구소의 많은 연수 참여를 바랍니다.

〈참고〉

- 기숙사 및 각종 편의시설 완비
- 수강료에는 교육기간중 숙박비, 식비, 교재 대, 강사료 등이 포함된 것임.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교통편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주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2) 861-1984, 1985
- 주소 : (우) 305-350 대전직할시 유성구 가정동 121-1(대덕연구단지내)
국제특허연수원 교학과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기간및 시기	수강료	주요교육내용
산업재 산권기 초과정	기업체 직원등 (산재권 초보자)	4박 5일 • 6.14-6.19 • 9.6-9.10	49,000원	○ 특허 · 상표 제 도, 특허 정보검 색요령, 특허명 세서 작성방법 등
특허 · 실용신 안전문 과정	기업체 직원등 (산재권 중급자)	4박 5일 • 11.1-11.5	85,000원	○ 특허심사기준, 청구범위해석, 특허분쟁사례등
상표 · 의장전 문과정	기업체 직원등 (산재권 중급자)	4박 5일 • 7.5-7.9	85,000원	○ 상표 · 의장심사 기준, 기업의 상 표개발 및 관리 전략, 상표 · 의 장출원 실무등
연구개발 과정	연구소 연구원 등	4박 5일 • 9.20-9.24 (화학) • 10.4-10.8 (종합)	73,000원	○ 특허명세서 작 성 및 청구범위 해석, 특허정보 검색 요령, Patent Map 실무 등
외국산 업재산 권제도 과정	연구소 연구원 기업체 직원등	4박 5일 • 10.11-10. 15	104,000원	○ 미국, EPO 특 허 · 상표제도등
PCT국 제출원 실무과 정	연구소 연구원 기업체 직원등	3박 4일 • 7.12-7.15	49,000원	○ PCT 출원절차 등
단체연 수과정	신청업 체임직 원등	2박 3일 (업체희망시 기)	42,000원	○ 기업의 특허관 리 전략, 특허분 쟁, 기타업체 희 망과목등

전자제품의 유지·보수용 부분품 수입 추천 안내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공고 제118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입선 다변화 품목 공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에 위임된 수입추천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품목)

외국에서 도입한 기계장비 및 국내에서 제작된 기계류중 전자제품의 유지·보수용부분품

제3조(추천 대상자 자격)

상기 제2조의 실수요자(또는 제조업자)

제4조(추천제한)

유지·보수용목적 이외의 용도(판매용이나 물량확보용 등에는 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추천기준)

유지·보수용 부분품이 국내수요에 비추어 경제성이 없어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품질, 규격, 특성 등이 국산대체 및 수입선 전환이 현저히 곤란하여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량에 한한다.

제6조(추천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분품을 수입코자 하는 경우의 수입추천 신청은 실수요자(또는 제조업자)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가. 수입승인 신청서 5부

나. Offer Sheet 1부(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Invoice)

다. Catalogue 또는 용도설명서 1부

라. 제2조의 모제품을 증별할 수 있는 수입면장 1부

마.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예외수입 불가피 사유서 1부

바. 기타 수입선 다변화품목 공고 제3조 제4항의 요건확인을 위해 본회가 요청하는 서류

제7조(처리기간)

가. 추천서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한다.

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외국기관 및 해외 공관과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2)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3) 관계기관 및 관계사와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제8조(유효기간)

1)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일로부터 30일로 한다.

2)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은 별표1의 가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 신청)

본회가 추천한 수입추천서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별표1의 나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유효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 신청)

(1) 본회가 추천한 수입추천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는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반려된 수입추천 신청서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별표1의 2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징수)

수입추천을 함에 있어 수입추천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78 Page에 계속>